

한강낚시 금지구역

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 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유어(낚시 등)행위 금지구역(24개)

- 독섬 1지역** : 자양2동 잠실수중보 ~ 청담대교 상류 67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
- 독섬 2지역** : 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 ~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독섬 3지역** : 서울숲 회전 고가시설 ~ 중랑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이촌 1지역** : 중랑천 합류부 ~ 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이촌 2지역** : 동호대교 북단 하류 800m ~ 한남대교 북단 상류 38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(전망데크 포함)
- 이촌 3지역** : 노들섬 전체,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 (거북선 선착장) ~ 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밤섬지역** : 밤섬 전체 및 마포대교 북단 상류 650m ~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망원 1지역** : 양화대교 북단 교량 ~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하류 5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망원 2지역** : 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교량 ~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망원 3지역** :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~ 당산철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난지 1지역** : 홍제천교 ~ 성산대교 북단 하류 1,300m (조정면허시험장 하류 5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난지 2지역** : 가양대교 북단 상류 800m(난지캠핑장 끝 호안 하류 측) ~ 가양대교 북단 하류 4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(생태습지연 연결한 내수면 포함)
- 난지 3지역** :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 ~ 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9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잠실지역** : 잠실5동 잠실수중보 ~ 잠실수중보 하류 1,3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잠원지역** : 동호대교 남단 하류 300m(리버시티) ~ 한남대교 남단 하류 1,000m(요트클럽 하류 10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반포 1지역** :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상류 200m (전망데크) ~ 하류 500m(임시선착장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반포 2지역** : 동작대교 남단 상류 450m(서래섬 하류 100m) ~ 동작대교 남단 하류 28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흑석지역** : 한강대교 남단 상류 1,360m(한강현대 아파트 114동 앞) ~ 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여의도 1지역** :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~ 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여의도 2지역** : 여의도동 셋강 내수면 전역(상·하류 합류부 및 연결한 내수면 포함)
- 양화 1지역** :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(여의도 셋강 하류 합류부) ~ 당산철교 남단 60m (해양소년단 수상 훈련장)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양화 2지역** :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 ~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양화3, 강서 1지역** : 염창동 안양천 합류부 하류 150m ~ 마곡철교 남단 하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강서 2지역** : 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 ~ 행주대교 남단 상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
- **한강교량** :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 교량은 낚시금지 구역임
- **한강공원 보행로** :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공원 내 보행로(자전거도로 포함)에서는 유어행위가 금지 됨

※ 금지구역은 총 30.38km로서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 호안 57km의 53.2%임.



-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**
-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 ~ 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중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구역
 -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 교량
 -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 (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통행로 포함)

- 제한하고자 하는 유어행위 제한대상**
-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
 - 자망어업, 투망어업, 연승어업, 정치망어업
 -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 (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, 낚시 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 제외)
 - 떡밥·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
 - 흘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흘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
 -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, 채취하는 행위
 -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
 -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

- 기타**
- 팔당댐 방류량 12,000m³/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

-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**
- 금지행위
 -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
과태료 : 1차 50만원, 2차 70만원, 3차 100만원
 - 은어포획, 낚시대 4대이상,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
과태료 : 1차 50만원, 2차 70만원, 3차 100만원
 - 생선가루,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
과태료 : 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
 -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자
과태료 : 1차 10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100만원

- 근거규정**
-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
 - 내수면 어업법 제18조, 하천법 제46조
 -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

—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구역
—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구역
■ 나들목 버스 차도 자전거